

경운대학교 졸업인증에관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64조의 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졸업인증이란 졸업요건으로 본 대학의 졸업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졸업인증의 종류) ① 본 대학교 졸업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어영역
2. 자기주도 학습역량영역
3. 봉사영역

② 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3조 ①항 모두를 인증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. 단, 야간학부(과)입학생, 편입생, 장애인, 체육특기자, 만학도, 외국인(외국인전형 합격자)은 졸업인증제를 면제한다.

③ 전항에서 규정한 졸업인증제 면제 요건 외에 졸업인증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(졸업학점 중 1/3이상 야간에 수업한 경우 등)가 있는 경우에는 졸업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4조(외국어영역)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외국어 성적을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

1. 토익(본 대학모의토익 포함)

가. 항공운항학과 : 토익 600점 이상

나.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치위생학과, 군사학과 : 토익 500점 이상

다. 가·나목 외의 학과 : 토익 400점 이상

② 토플, JPT, HSK 등 공인된 외국어 성적으로 제출할 경우 졸업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항의 기준에 준한 성적점수를 대체 인정할 수 있다.

③ ①항의 인증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비교과 어학과정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수하면 외국어인증을 부여한다.

1. 기준점수 1점 ~ 100점 부족 : 1개과정 이상 이수

2. 기준점수 101점 ~ 150점 부족 : 2개과정 이상 이수

3. 기준점수 151점 이상 부족 ~ : 2개과정 이상 이수 + 모의토익시험 1회 이상 응시

제5조(자기주도 학습역량영역)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기주도 학습역량 영역(에프터스쿨,이룸 등)5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

제6조(봉사영역)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사회봉사를 수행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

1. 사회봉사 : 15시간 이상 수행

- 가. 학부(과)별로 시행하는 사회봉사활동
- 나. 사회봉사지원센터를 통한 사회봉사활동
- 다. 새마을아카데미를 통한 새마을봉사활동
- 라. 기타 개인별로 시행하는 사회봉사활동(VMS에 등록된 기관에 한함)

② 이 규정 제6조의 인증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일정기간 이상의 학과도우미를 수행하면 사회봉사인증을 부여한다.

- 1. 기준시간 1시간 ~ 5시간 부족 : 학과도우미 1주 이상 수행
- 2. 기준시간 6시간 ~ 10시간 부족 : 학과도우미 2주 이상 수행
- 3. 기준시간 11시간 이상 부족 ~ : 학과도우미 3주 이상 수행

제7조(인증절차) ① 인증 분야별 인증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인증분야별 제출시기에 따라 경력관리시스템(KW-CDP)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과에서는 인증분야별 인증조건 이행여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외국어영역 : 인터내셔널센터
- 2. 자기주도 학습역량영역 : 교무처
- 3. 봉사영역 : 사회봉사지원센터

제8조(학적부 기재) ① 교무처에서는 해당 인증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의 성적기록부에 졸업인증 사항을 기재한다.

② 인증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인증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수료로 처리한다.

제9조(졸업인증위원회) ① 졸업 인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졸업인증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졸업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졸업인증 인정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졸업인증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학생처장, 인터내셔널센터장, 사회봉사지원센터장과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이 위촉하는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졸업인증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적용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